2004년 3월 5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사무국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No.14)의 송부와  
표시별 명칭의 삭제에 대하여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No.14)를 작성하였기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또한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에서의 「표시별 명칭」 삭제 건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래

1. 이미 2000년 6월 21일자 12장공련 명칭 제2호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4년 4월 30일부로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에서 「표시별 명칭」을 삭제합니다.

2. 원래대로라면 「표시별 명칭」을 삭제한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를 새롭게 배포해야 하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2004년 4월 30일부로 「표시별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쇄물의 배포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기 2000년 6월 21일자 12장공련 명칭 제2호에서는 「표시별 명칭」이 「표시 명칭」으로 전환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여 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서 83종의 법정 색소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정하는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령 (2003년 7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에 기재된 색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2001년 3월 30일 자 13장공련명칭제1호 및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No.1 및 No.2 개정판)」를 통해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표시별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적색 2호」 등도, 2004년 4월 30일부로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예시 1〕

|  |  |  |
| --- | --- | --- |
|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의 번호 | 표시 명칭 | 표시별 명칭 |
| No.1 | 적색2호 | 적2 |
| No.1및 No. 2 개정판 | 적2 | 적색2호 |

〔예시 2〕

|  |  |  |
| --- | --- | --- |
| 「화장품의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의 번호 | 표시 명칭 | 표시별 명칭 |
| No.1 | 황색403호의 (1) | 황403(1) |
| No.1및 No. 2 개정판 | 황403(1) | 황색403호의 (1) |

4. 「표시별 명칭」은 삭제하게 되었으나, 2004년 5월 1일 이후, 이번에 삭제하게 된 「표시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화장품 성분 표시 명칭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표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소비자 등으로부터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